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- 다음 -

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현황

구 분	성 명	직 위	임 기
이사회 의장	허 남 권	대표이사	2018. 6. 1. ~ FY2018 정기주주총회일
선임사외이사	권 정 수	사외이사	2018. 6. 1. ~ FY2018 정기주주총회일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이사회 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임

*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사외이사 구성 의무 미적용 회사

신영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허 남 권